

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

2025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수가가 결정되어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 특히, 2025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(기존 입소자 2.3명 당 1명→개선 입소자 2.1명 당 1명)에 따른 것으로, 기관의 인력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.3: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('25.1.1~한시 기간 미정)을 둬에 따라 당 시설도 인력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이중수가체계로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.

[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

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▶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 : 노인복지법시행규칙

별표4 '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'

[시설 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]

(단위:원)

등급	2024년 수가	2025년 수가 (2.1명:1명)	본인부담금 (2.1명:1명)	2025년 수가 (2.3명:1명)	본인부담금 (2.3명:1명)
1등급	84,240	90,450	18,090	86,030	17,210
2등급	78,150	83,910	16,780	79,810	15,960
3~5등급	73,800	79,240	15,850	75,360	15,072

[장기요양 등급별 월(30일기준) 본인부담금 변화]

(단위:원)

등급	본인부담금(2.1명:1명)			본인부담금(2.3명:1명)		
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
1등급	542,700	325,620	217,080	516,180	309,710	206,470
2등급	503,460	302,080	201,380	478,860	287,320	191,540
3~5등급	475,440	285,260	190,180	452,160	271,300	180,860

※ 위 금액은 식재료비 미포함 금액입니다.

[비급여 변경에 따른 비급여 계약사항]

(단위:원)

항 목	2024년 금액	2025년 금액
식재료비(1식기준)	2,000원	2,000원(동결)
간식비	1,000원	1,500원(인상)

** 비급여항목(식재료비(3식) 및 간식비 : 7,500원X30일=225,000원)입니다.

**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.

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**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.1:1의 인력배치 운영의 경우 7.37%, 2.3:1의 인력배치의 경우 2.12% 상향조정** 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.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 **2025년 1월**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



비룡노인전문요양원